

보건실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보건실은 수원대학교 보건실(이하 ``보건실``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보건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킴으로써 학교 교육 및 연구의 능률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보건실은 수원대학교 교내에 위치한다.

제4조(업무) 보건실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건강 상담에 관한 사항
3. 건강 교육 및 건강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4. 보건 진료 및 제반 관련 사항
5. 응급처치
6. 교내 환경 위생
7. 학생활동에 구호반 편성
8. 환자 치료 및 상담의 기록(GS program)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5조(실장) 1. 보건실에는 실장을 두며, 총장이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실장을 임명하고 실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보건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직원) 보건실 직원은 실장이 제청하여 보건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보건위원회

제7조(보건위원회) 1. 보건실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위하여 보건실에 보건위원회를 둔다.

2. 보건위원회는 실장, 교무연구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실장 및 총무처장으로 구성하고 실장이 위원장이 되며 실장 유고시에는 교무연구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보건위원회의 결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제8조(보건위원회의 심의 사항) 보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관리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건실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건실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건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 4 장 재정 및 예·결산

제 9조(재정) 보건실의 경비는 보건비,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회계년도) 보건실의 회계연도는 수원대학교의 규정에 준한다.

제11조(예산·결산)실장은 매년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진료비) 보건실의 진료비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진료비 세목은 매학기 초 총장이 정하여 공시한다.

1. 간단한 응급처치 : 무료
2. 투약 : 무료

제13조(해산시의 재산 귀속)보건실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수원대학교에 귀속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199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